

# 2018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초록

## 1 회의개요

- 1. 일시: 2018. 4. 06.(금), 17:20-18:15
- 2. 장소: 충남 보령 호텔머드린 1층 크리스탈홀
- 3. 출석이사: 재적이사 25명 중 13명 참석
  - 회장직무대행: 이장훈
  - 부회장: 박진우
  - 이 사: 김광섭, 김희상, 강왈수, 김종필, 김태정, 이광수, 이 준, 임진영, 임종훈, 변우섭, 이동우

## 2 논의결과(주요내용)

- I. 개회선언: 17시 20분 개의
- II. 전차회의록 초록: 원안 접수
- 1. 2018년 제2차 이사회
- III. 보고사항

### 1. 협회장 사임 및 직무대행 선임

#### 가. 주요내용

- 1) 정제묵 회장은 2018년 3월 23일자의 사직서를 당일 제출하여 사임함.
- 2) 직무대행 선임
  - 직무 대행: 이장훈 부회장 (1961.03.23.)
  - 근 거: 회장의 사임, 잔여임기 1년 이상, 연장자 순 (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없음.)

### 대한요트협회 정관 중

제21조(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)

-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, 정책의 전환,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
-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,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

### 나. 논의 결론: 원안 접수

## 2. 2018년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 결과

### 가. 주요내용

#### 1) 회의개요

○ 일 시: 2018.3.22.(목) 15:20~17:45

○ 장 소: 올림픽회관 6층 2 회의실

○ 참석위원: 재적위원 9명 중 7명 참석

2) 보고사항 2건, 심의사항 6건의 결과 보고됨.

### 나. 논의 결론: 원안 접수

## 3. 제17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개최 결과

### 가. 주요내용

#### 1) 대회개요

○ 대회명: 제17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 
(겸 2018년도 제1차 국가대표선발전)

○ 대회기간: 2018. 3. 29.(목)~4. 2.(월), 5일간

○ 대회장소: 경북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

○ 주최: 해양경찰청, 대한요트협회

○ 주관: 대한요트협회, 경북요트협회

○ 후원: 포항시, 포항해양경찰서, 대한체육회, (주)진아

○ 참가규모: 16개시도 총 183척 218명 출전

### 나. 논의 결론: 원안 접수

## 4. 1차, 2차 선발전 레이저4.7 고등부 실적·시상 인정

### 가. 주요내용

#### 1) 배경

2018년도 제2차 이사회(2.27.개최)에서 제17회해양경찰청장배(1차국가대표선발전)과 제31회대통령기전국시도대항요트대회(2차국가대표선발전)에 레이저4.7 고등부는 아시안게임 출전 자격의 나이제한에 해당이 됨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나 실적 및 시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원안이 의결되었음.

이후, 상기 대회는 레이저4.7 고등부 선수가 있는 고등학교가 위 조건으로는 선수를 대회에 참가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접수되었음.  
(상장이 없을 경우, 학교측에서 대회 출전을 불허하는 등의 사유)

2) 대회위원회 의결

제2차 대회위원회(서면)

- 일시: 2018. 3. 13.(화)
- 제출기한: 2018. 3. 14.(수)
- 장소: 전산망에 의한 서면 의결
- 의결서 제출위원: 재적위원 7명 중 7명 제출
- 심의결과: 1차, 2차 선발전 레이저4.7 고등부 실적·시상 인정에 전원 찬성함.

3) 본 사안은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 선발관련으로, 1차 선발전 참가 참가 등록 마감에 임박하여 “1차, 2차 국가대표선발전 레이저4.7 고등부 실적·시상을 인정”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사들께 이메일로 사전 보고 후 시행함. (2018.3.19.)

4) 1차 국가대표선발전에 남자 고등부 3명, 여자 고등부 3명 출전함.

나. 논의 결론: 원안 접수

IV. 심의사항

1. 선거관리위원회 구성

가. 주요내용

1) 배경 및 관련 규정

(1) 제안배경

- 회장이 2018년 3월 23일자로 사임하였으며,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로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 함. [정관 제21조 제3항 참고]
- 회장 선거를 위하여 정관과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.

(2) 선거관리위원회 위촉 방식

- 정관 제20조(선거의 중립성) 제1호에 따라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거나 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관리를 할 수 있음.

**정관 제20조(선거의 중립성) ①**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 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-> 대한요트협회 관할인 “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” 는 중요선거가 있을 경우 위탁업무를 할 수 없으며,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가 중

요선거인 관계로 위탁을 맡기 불가능하다고 함.

(3) 위원 구성 [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2항]

-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-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(학계, 언론계, 법조계 등)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함.

(4) 위원 위촉 절차 [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3항]

- 위원위촉: **회장(직무대행)이 추천 -> 이사회 동의**
- 위원장 선임: 호선함. 협회와 관계있는 위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음.

나. 논의 결론

- 이사회는 회장직무대행이 추천한 외부위원 5명의 위촉을 동의하며, 이사회에서 협회 관계 위원으로 임진영 이사, 변우섭 이사를 추천·동의하여 총 7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함.

구분	성명	소속/직위	주요 경력
외부 (5명)	박준기	인천대 체육학부 교수	-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장 수상 - 대한장애인육상연맹 회장선거관리위원장 (2016.11-2017.2)
	유영돈	광남고등학교 교사	- 인천안시안게임 체조 경기진행담당관 - 대한체육회 체육상 심판부문 장려상(2003)
	김해주	법무법인 명세 대표변호사	- 국세청 근무 (1986-1993) - 사법연수원 제43기
	박현철	KBS 기자(부장)	- KBS (1994-현재)
	성상열	한국남시채널(FTV) 회장	- 에이트벤처스 창업투자 감사(2001-2006) - (재)탄천연구포럼 감사 (2015~현재)
협회 관계 (2명)	임진영	대한요트협회 이사	- 여수시요트협회 전무이사
	변우섭	대한요트협회 이사	- 해양경찰청 체육단, 인천시체육회 감독

2. 대회위원회 규정 개정

가. 주요내용

1) 제안배경

- 2018년도 제2차 이사회(2.27.개최)에서 대회위원회규정(제정 안) 중 자격유지 조항의 “연 2회 이상 주최/주관대회를 참가하여 매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” 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해당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승인대회까지 확장하는 것을 검토 요청

하며 원안을 승인하였음.

2) 2018년 제4차 대회위원회(2017.4.1.개최)는 아래와 같이 개정(안)을 의결하였음.

3) 규정 개정(안)

개정 전	개정 후	개정 요지
<p><b>제19조(자격취득)</b> ① 응시자격은 만 20세 이상이다.</p> <p>② 자격취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 2급 이상</li> <li>2. 대회참가 경력 등의 세일링 경력 2년 이상</li> <li>3. 강습회 이수 당해 연도까지 협회 주최·주관 대회의 경기운영 요원으로 실기 연수 2회 참가</li> </ol> <p>③ 자격취득 요건을 갖춘 자는 강습회 이수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‘별지 제2호서식’을 위원회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.</p>	<p><b>제19조(자격취득)</b> ① 응시자격은 만 20세 이상이다.</p> <p>② 자격취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 2급 이상</li> <li>2. 대회참가 경력 등의 세일링 경력 2년 이상</li> <li>3. 강습회 이수 당해 연도까지 협회 주최 또는 주관 대회의 경기운영요원으로 실기 연수 1회 참가</li> </ol> <p>③ 자격취득 요건을 갖춘 자는 강습회 이수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‘별지 제2호서식’을 위원회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.</p>	<p>승인대회 추가하지 않고 주최 또는 주관 대회로 한정하되, 회수를 2회에서 1회로 감소</p>
<p><b>제20조(유효기간)</b> ① 경기운영관 자격의 유효 기간은 경기운영관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4년 동안이다.</p> <p>② 유효기간 이내에 협회 주최·주관 대회의 경기운영관으로 연 2회 이상 참가하여 매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자격을 유지한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‘별지 제2호서식’을 위원회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자격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</p>	<p><b>제20조(유효기간)</b> ① 경기운영관 자격의 유효 기간은 경기운영관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2년 동안이다.</p> <p>② 유효기간 이내에 협회 주최 또는 주관 대회의 경기운영관으로 3회 이상 참가하여 자격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2항의 자격 갱신 조건을 갖춘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‘별지 제2호서식’을 제출하여,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자격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</p>	<p>승인대회 추가하지 않고 주최 또는 주관 대회로 한정하되, 매년 2회 이상 참가를 2년에 3회 이상으로 완화. 따라서, 자격 유효기간을 2년으로 명확히 함.</p> <p>문구 명확화.</p>

나. 논의 결론

1) 원안 승인

V. 폐회 선언: 18시 15분 산회